

#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1. 主要 法的根據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총 정원의 책정)

-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
-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 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3항 :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년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

- 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되어야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정 원	직 급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	1997. 1. 1	7,324	농업연구사 628, 농촌지도관 504, 농촌지도사 5,492, 생활지도사 700

##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정원을 본청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며,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기구 인력이 경기자치 12200-3585(96. 12. 6)호로 승인됨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경기 자치 12200-3664(96. 12. 13)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의 정원 332명에서 335명으로 직속기관 91명에서 144명으로 사업소 64명에서 78명으로 읍·면·동 310명에서 307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